

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

의안 번호	회 의 차 수	회 의 일 자 .	재 의 자
제 71 호	제 36 차	1986. 12. 24.	총재 박 성 상

의 안 : "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" 개정

의결사항 : "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"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재의관계 법규조항 : 한국은행법 제7조 및 은행법 제30조의 2

재의취지 : 영업기업군에 대한 여신권중억제 및 재무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재의함.

참 고 : 제의관계 법규조항 (발제)

한국은행법 제7조

- (1) 한국은행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둔다.
- (2)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- (3)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- (4) ~ (6) 생략

은행법 제30조의 2

- (1)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동일계열기업군 단위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.
- (2) 제1항의 동일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의 범위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.

“금융기관여신운용관점” 개정 주요내용

—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제도 개선

- “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의 선정기준을 총여신액 1,000억원이상에서 1,50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낮은 계열기업군을 제외함으로써 여신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돕고자 함
-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금 이외에 여신에 대하여도 그 증가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전종여신의 근본적 시정을 도모하고자 함.
- “중소기업창업지원법”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일부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투자회사의 원활한 중소기업 창업지원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.

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 개정(안)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 1 장 총 칙	제 1 장 총 칙	
제 1 조 (생 략)	제 1 조 (현행과 같음)	
제 2 장 금융기관의 여신운용 및 투자지침	제 2 장 금융기관의 여신운용 및 투자지침	
제 2 조~제 4 조 (생 략)	제 2 조~제 4 조 (현행과 같음)	
제 3 장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	제 3 장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	
제 5 조 (대상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제한) ①금융기관은 금융기관 총 여신이 <u>1,000억원</u> 이상인 계열기업군 (이하 "대상기업군"이라 한다) 및 그 소속기업체 (이하 "대상기업체"라 한다)에 대하여는 여신취급을 가급적 억제하고 이의 재무구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.	제 5 조 (대상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제한) ①금융기관은 금융기관 총 여신이 <u>1,500억원</u> 이상인 계열기업군 (이하 "대상기업군"이라 한다) 및 그 소속기업체 (이하 "대상기업체"라 한다)에 대하여는 여신취급을 가급적 억제하고 이의 재무구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.	○ 대상기업군의 선정기준여신상향조정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
제 6 조 (대상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) 은행감독원장은 대상기업군에 대한 여신편중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총대출금 증가율 범위내에서 대상기업군별로 금융기관의 대출금증가한도를 선정할 수 있다.	제 6 조 (대상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) 은행감독원장은 대상기업군에 대한 여신편중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대상기업군에 대한 대출금과 여신의 증가한도를 각각 선정할 수 있다.	○ 편중여신시정을 위하여 지급보충도 규제대상에 포함
제 7 조~제 8 조 (생 략)	제 7 조~제 8 조 (현행과 같음)	
제 9 조 (규정적용일부배제) 은행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상기업체에 대하여는 제 6 조 및 제 8 조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	제 9 조 (규정적용일부배제) 은행감독원장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	
1. 「단기금융업법」에 의한 단기금융회사, 「상호신용금융고법」에 의한 상호신용금고	1. 「단기금융업법」에 의한 단기금융회사, 「상호신용금융고법」에 의한 상호신용금고,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	○ 정부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촉진시책과의 조화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2. 기업체에 독성에 비추어 이 규정에 의한 규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은행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업체 제 9 조의 2 (생 략) 제 4 장 보 칙 제 10 조~제 12 조 (생 략) (신 설)	2. (현행과 같음) 제 9 조의 2 (현행과 같음) 제 4 장 보 칙 제 10 조~제 12 조 (현행과 같음) 부 칙 이 규정은 1987. 1. 1 부터 시행한다.	